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
----------	----

제출년월일 : 2002. 9. 4
제출자 : 최광렬의원외6인

1. 제안이유

사하구 직제 신설에 따른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의정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포함
(안 제5조 제1항 “3호” 신설)

3. 관계법령

가.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3호”를 “4호”로 하고, “3호”를 신설한다.

3. 구 사업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감사또는조사의 대상기관)</p> <p>①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區) 2. 구 보건소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구 관할 전 행정동 4. 법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p>제5조(감사또는조사의 대상기관)</p> <p>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區) 2. 구 보건소 <p>3. 구 사업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구 관할 전 행정동 5. 법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